

---

2019년

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---

2020. 2.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## 순서

I. 산출 기준 .....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.....	2
II-1. 전체 사건 .....	2
II-2. 일반 사건 .....	3
III. 용어 정의 .....	4

# I. 산출기준

## 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19. 1. 1. ~ 2019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\*을 갖추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\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 II. 2019년 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### II-1. 전체 사건

(2019.1.1. ~ 2019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요양 병원	약국	보건소 · 지소	
계	개시	1,784	400	522	364	271	34	116	12	19	41	3	2
	각하	1,029	140	247	199	281	13	114	2	12	19	2	0
	개시율	63.4	74.1	67.9	64.7	49.1	72.3	50.4	85.7	61.3	68.3	60.0	100.0
서울	개시	521	159	99	93	103	6	43	7	5	4	2	-
	각하	359	61	62	62	117	10	39	1	6	1	-	-
	개시율	59.2	72.3	61.5	60.0	46.8	37.5	52.4	87.5	45.5	80.0	100.0	-
경기	개시	346	34	122	85	52	8	19	-	7	17	1	1
	각하	223	33	69	40	55	-	20	1	2	2	1	0
	개시율	60.8	50.7	63.9	68.0	48.6	100.0	48.7	0.0	77.8	89.5	50.0	100.0
인천	개시	120	22	35	37	12	-	11	-	1	2	-	-
	각하	80	22	24	10	14	-	6	-	3	1	-	-
	개시율	60.0	50.0	59.3	78.7	46.2	-	64.7	-	100.0	40.0	0.0	-
부산	개시	143	32	37	35	19	3	13	-	1	3	-	-
	각하	81	6	22	23	18	-	8	-	1	3	-	-
	개시율	63.8	84.2	62.7	60.3	51.4	100.0	61.9	-	50.0	50.0	-	-
경남	개시	137	38	50	22	13	4	5	-	-	4	-	1
	각하	39	1	12	12	8	-	4	-	1	1	-	0
	개시율	77.8	97.4	80.6	64.7	61.9	100.0	55.6	-	0.0	80.0	-	100.0
울산	개시	29	-	20	2	4	-	2	-	1	-	-	-
	각하	7	-	3	1	1	-	1	-	-	1	-	-
	개시율	80.6	-	87.0	66.7	80.0	-	66.7	-	100.0	0.0	-	-
대구	개시	68	33	3	19	7	4	1	-	-	1	-	-
	각하	36	7	4	10	11	1	1	-	1	1	-	-
	개시율	65.4	82.5	42.9	65.5	38.9	80.0	50.0	-	0.0	50.0	-	-
경북	개시	49	-	28	7	5	-	5	-	-	4	-	-
	각하	27	-	13	4	8	-	2	-	-	-	-	-
	개시율	64.5	-	68.3	63.6	38.5	-	71.4	-	-	100.0	-	-
광주	개시	50	14	22	6	5	1	1	1	-	-	-	-
	각하	15	1	1	3	5	-	5	-	-	-	-	-
	개시율	76.9	93.3	95.7	66.7	50.0	100.0	16.7	100.0	-	-	-	-
전북	개시	41	14	12	5	5	2	3	-	-	-	-	-
	각하	26	0	3	9	8	-	5	-	-	1	-	-
	개시율	61.2	100.0	80.0	35.7	38.5	100.0	37.5	-	-	0.0	-	-
전남	개시	29	6	4	16	-	-	2	-	-	1	-	-
	각하	21	-	4	6	5	1	4	-	-	1	-	-
	개시율	58.0	100.0	50.0	72.7	0.0	0.0	33.3	-	-	50.0	-	-
제주	개시	26	11	11	-	4	-	-	-	-	-	-	-
	각하	4	1	1	1	1	-	-	-	-	-	-	-
	개시율	86.7	91.7	91.7	0.0	80.0	-	-	-	-	-	-	-
대전	개시	78	7	36	16	12	1	1	2	3	-	-	-
	각하	38	5	5	10	12	-	4	-	2	-	-	-
	개시율	67.2	58.3	87.8	61.5	50.0	100.0	20.0	100.0	100.0	0.0	-	-
충남	개시	40	19	3	6	5	-	3	-	-	4	-	-
	각하	28	2	7	4	5	-	8	-	-	2	-	-
	개시율	58.8	90.5	30.0	60.0	50.0	-	27.3	-	-	66.7	-	-
충북	개시	54	8	19	8	15	-	3	-	1	-	-	-
	각하	23	1	7	2	6	1	5	-	-	1	-	-
	개시율	70.1	88.9	73.1	80.0	71.4	0.0	37.5	-	100.0	0.0	-	-
세종	개시	4	-	-	-	2	1	1	-	-	-	-	-
	각하	1	-	-	-	1	-	-	-	-	-	-	-
	개시율	80.0	-	-	-	66.7	100.0	100.0	-	-	-	-	-
강원	개시	49	3	21	7	8	4	3	2	-	1	-	-
	각하	21	-	10	2	6	-	2	-	1	-	-	-
	개시율	61.8	100.0	60.0	75.0	25.0	100.0	60.0	100.0	0.0	100.0	-	-

\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 개시건수 + 각하건수 ) × 100

## II-2. 일반 사건

(2019.1.1. ~ 2019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 병원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요양 병원	약국	보건소 · 지소
계	개시	1,262	185	321	312	241	33	115	9	19	23	2	2
	각하	1,029	140	247	199	281	13	114	2	12	19	2	-
	개시율	55.1	56.9	56.5	61.1	46.2	71.7	50.2	81.8	61.3	54.8	50.0	100.0
서울	개시	365	72	50	83	100	5	43	5	4	1	2	-
	각하	359	61	62	62	117	10	39	1	6	1	-	-
	개시율	50.4	54.1	44.6	57.2	46.1	33.3	52.4	83.3	40.0	50.0	100.0	-
경기	개시	237	5	71	74	44	8	19	-	7	8	0	1
	각하	223	33	69	40	55	-	20	1	2	2	1	-
	개시율	51.5	13.2	50.7	64.9	44.4	100.0	48.7	0.0	77.8	80.0	0.0	100.0
인천	개시	86	5	24	32	12	-	10	-	1	2	-	-
	각하	80	22	24	10	14	-	6	-	-	3	1	-
	개시율	51.8	18.5	50.0	76.2	46.2	-	62.5	-	100.0	40.0	0.0	-
부산	개시	99	17	18	29	17	3	13	-	1	1	-	-
	각하	81	6	22	23	18	-	8	-	1	3	-	-
	개시율	55.0	73.9	45.0	55.8	48.6	100.0	61.9	-	50.0	25.0	-	-
경남	개시	105	25	38	18	10	4	5	-	-	4	-	1
	각하	39	1	12	12	8	-	4	-	1	1	-	-
	개시율	72.9	96.2	76.0	60.0	55.6	100.0	55.6	-	0.0	80.0	-	100.0
울산	개시	24	-	16	2	3	-	2	-	1	-	-	-
	각하	7	-	3	1	1	-	1	-	-	1	-	-
	개시율	77.4	-	84.2	66.7	75.0	-	66.7	-	100.0	0.0	-	-
대구	개시	42	15	1	15	6	4	1	-	-	-	-	-
	각하	36	7	4	10	11	1	1	-	1	1	-	-
	개시율	53.8	68.2	20.0	60.0	35.3	80.0	50.0	-	0.0	0.0	-	-
경북	개시	31	-	14	5	5	-	5	-	-	2	-	-
	각하	27	-	13	4	8	-	2	-	-	-	-	-
	개시율	53.4	-	51.9	55.6	38.5	-	71.4	-	-	100.0	-	-
광주	개시	36	6	18	4	5	1	1	-	1	-	-	-
	각하	15	1	1	3	5	-	5	-	-	-	-	-
	개시율	70.6	85.7	94.7	57.1	50.0	100.0	16.7	-	100.0	-	-	-
전북	개시	32	7	10	5	5	2	3	-	-	-	-	-
	각하	26	-	3	9	8	-	5	-	-	1	-	-
	개시율	55.2	100.0	76.9	35.7	38.5	100.0	37.5	-	-	0.0	-	-
전남	개시	21	1	1	16	-	-	2	-	-	1	-	-
	각하	21	-	4	6	5	1	4	-	-	1	-	-
	개시율	50.0	100.0	20.0	72.7	0.0	0.0	33.3	-	-	50.0	-	-
제주	개시	20	10	7	-	3	-	-	-	-	-	-	-
	각하	4	1	1	1	1	-	-	-	-	-	-	-
	개시율	83.3	90.9	87.5	0.0	75.0	-	-	-	-	-	-	-
대전	개시	61	6	24	12	12	1	1	2	3	0	-	-
	각하	38	5	5	10	12	0	4	0	0	2	-	-
	개시율	61.6	54.5	82.8	54.5	50.0	100.0	20.0	100.0	100.0	0.0	-	-
충남	개시	24	10	1	3	4	-	3	-	-	3	-	-
	각하	28	2	7	4	5	-	8	-	-	2	-	-
	개시율	46.2	83.3	12.5	42.9	44.4	-	27.3	-	-	60.0	-	-
충북	개시	41	5	13	8	11	-	3	-	1	-	-	-
	각하	23	1	7	2	6	1	5	-	-	1	-	-
	개시율	64.1	83.3	65.0	80.0	64.7	0.0	37.5	-	100.0	0.0	-	-
세종	개시	4	-	-	-	2	1	1	-	-	-	-	-
	각하	1	-	-	-	1	-	-	-	-	-	-	-
	개시율	80.0	-	-	-	66.7	100.0	100.0	-	-	-	-	-
강원	개시	34	1	15	6	2	4	3	2	-	1	-	-
	각하	21	-	10	2	6	-	2	-	1	-	-	-
	개시율	61.8	100.0	60.0	75.0	25.0	100.0	60.0	100.0	0.0	100.0	-	-

\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 개시건수 + 각하건수 ) × 100

## II. 용어 정의

### 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#### 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#### 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#### 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 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### 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#### 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#### 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#### 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#### 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#### 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#### ○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

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치과의원

- 치과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한의원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